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86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4. 14.
3. 회 부 일: 2025.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간시간이나 주말시간에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해당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활체육시설의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이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의 시간 배정 및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② (생략)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약계층이 해당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생략)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체 운영 시간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게 배정할 것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지역 주민의 공평한 이용을 보장할 것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설을 개방하여야 함¹⁾.

- 그런데 개방시설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야간 또는 주말시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균등한 사용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됨.

-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이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생활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시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의 시간 배정 및 특정한 과도한 이용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광명시·보령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각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행사 등에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공평한 이용 환경 구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관련 조례 입법례 >

조례	관련 규정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를 하되, 동일 호 내에서 경합 시 광명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1. 공공행사 : 국가·국회·도·시·시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력증진 및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의2.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단,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한다.) 5.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활동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7.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의 체육활동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9. 그 밖의 행사

-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참고할 때 ‘취약계층’을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규정하여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 둘째, 안 제6조제3항과 관련하여, 동 내용은 ‘개방 및 이용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8조에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례	관련 규정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 보조, 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 훈련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행사 5.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말한다. <개정 2021.8.30.>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전람 등 행사 9. 그 밖의 행사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 ② 이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 2. 시 운동경기부의 체육 행사 또는 시(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 한다)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체육 행사,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 3.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 4. 시 교육청 또는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 5.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 6. 시 거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청소년(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노인(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록단체

- 셋째, 안 제8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전문·생활체육시설 사용 시간 중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은 유휴 상태 발생 시의 비효율성 및 일반 이용자의 민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여건과 시설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음.³⁾⁴⁾
-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⁵⁾, 부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일’의 개념상 시행일 당일

3) < 문체부 수정안 >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생략) <신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체 운영 시간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게 배정할 것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지역 주민의 공평한 이용을 보장할 것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취약계층을 위해 적정 시간을 배분하는 등의 이용 편의 기준을 마련-- 2. -----이 독점하는 등 과도한 이용으로 ----- ----- -----

- 4) 서울시, 경기도, 경북, 경기도 하남시, 전남 강진군, 전북 부안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할당된 시간에 취약계층이 사용하지 않을 때의 비효율성, 특정 요일·시간대 고정으로 인한 운영상 경직성, 공공체육시설의 배타적 사용 우선권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중립성 문제, 안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상 상충성 등을 고려할 때, 안 제1호의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 안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기준의 적용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에는 하위 법령의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⁶⁾,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개방·개방제한,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칙 개정 대신 안 제8조제4항에 조례 위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75

- 6) ○ “시행일의 결정은 제정·개정 당시의 입법정책적인 문제이지만, 시행일을 정할 경우에는 ① 국민에게 그 법률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고, ② 하위 법령의 입법을 위한 소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③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특히,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기관의 설립이나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국회 법제실(2019), 「법제이론과 실제」, p.705-706)

[참고자료1]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 문체부)

□ 공공체육시설 현황

(‘23년말 기준, 단위: 개소)

계	육상경기장	축구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간이운동장	기타*
37,176	246	1,146	1,439	898	542	26,838	6,067

*주) 기타: 파크골프장 346개소, 풋살장 557개소 등 포함

□ 연도별 공공체육시설 확충 추이

(단위: 개소)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28,578	30,185	31,554	33,729	35,941	37,176
육상경기장	255	252	252	253	247	246
축구장	1,019	1,040	1,064	1,095	1,109	1,146
체육관	1,066	1,139	1,194	1,275	1,337	1,439
테니스장	21,847	22,866	23,834	25,455	25,983	26,838
수영장	797	818	832	856	873	898
간이운동장 (마을체육시설)	428	457	474	492	512	542
기타	3,166	3,613	3,904	4,303	5,880	6,067
전년대비 증감률	6.1%	5.6%	4.5%	6.9%	6.6%	3.4%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민간시설 포함	4.45㎡/인	4.51㎡/인	4.59㎡/인	4.64㎡/인	4.89㎡/인	5.40㎡/인